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인제, 박승진,
박철성, 송도호, 아이수루,
, 왕정순, 유정희, 이민옥,
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
임만균, 정준호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 법규 개선 권고로 인해 [별지] 하단에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, 추첨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기입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
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 하단에 아래 항목을 신설한다.

※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] ※ (생략) <신설>	[별표] ※ (현행과 같음) ※ <u>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.</u>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에 따라 같은 조례안 [별표]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 하단에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을 신설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관련부서(장애인복지정책과) 확인결과 기시행 중인 2명 이상 동일 순위자일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의 근거를 규정한 안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계 분석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] [별표]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(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)

[별표] <개정 2019.9.26.>

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(제5조관련)					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 노인	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유가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2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	미과세 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	미과세 대상자	미과세 대상자

※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자료 :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발췌